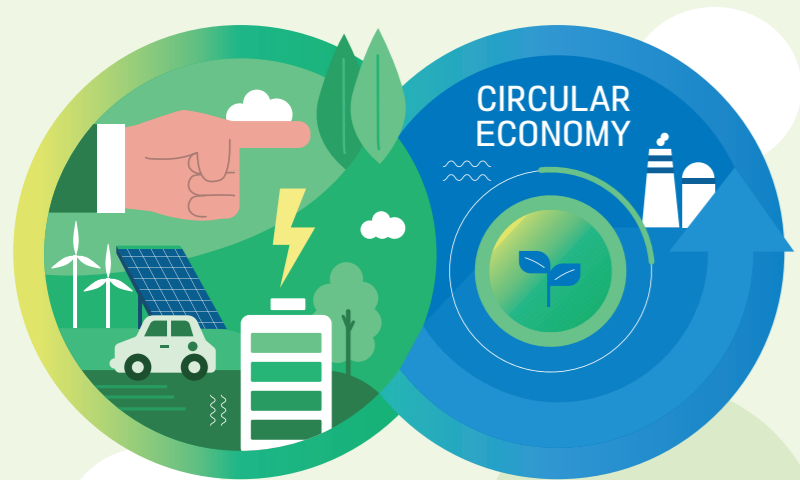


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



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란 무엇인가요?



규제샌드박스

-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(기간·장소·규모)하에서 현행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·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

관련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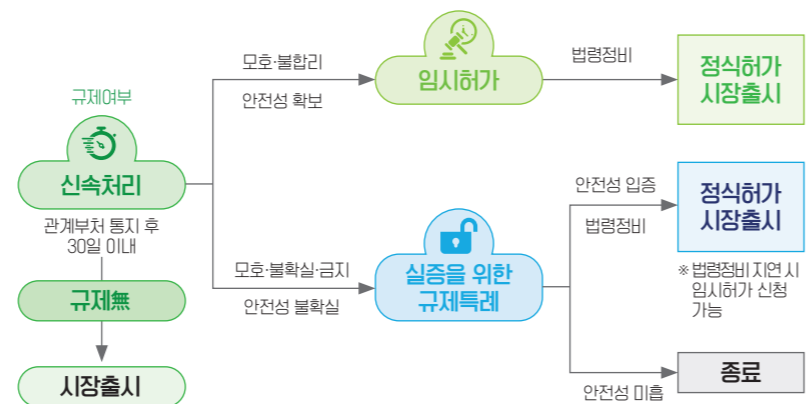
-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7조~제34조
-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」 제22조~제32조
-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」

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범위

-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 하는데 사용되는 기술과 서비스

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종류

- (신속처리) 신기술·서비스 관련 인·허가사항 및 규제 등을 관계기관에 일괄 확인(필요에 따라 규제특례, 임시허가 제도 연계)
- (실증을 위한 규제특례) 신기술·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앞서 안전성 등을 시험·검증 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 유예(2년 이내 1회연장 가능, 법령정비요청제를 통해 해당시 임시허가 전환 가능)
- (임시허가) 안전성 등의 검증이 완료된 신기술·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관련 규제 유예(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특례기간 연장)



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

구분	실증·테스트 목적 [구역·기간·규모 등 제한]	시장출시 목적 [구역·규모 등 제한 정도 낮거나 없음]
규제모호	① 신속처리 ▶ 허가 필요 여부,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▶ 신청인 → 환경부(기술원) → 관계부처 30일 내 회신	
법령공백·적용 부적합	② 규제특례 ▶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2년 이내 규제적용 배제 (1회연장, 최대 4년 이내) ▶ 신청인→환경부(기술원) →관계부처 협의→ 사전검토위원회→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 심의위원회(민간합동)심의	③ 임시허가 ▶ 시장출시를 위해 2년 이내 임시허가 부여 (1회 연장, 법령정비 시까지 연장으로 간주) ▶ 신청인→환경부(기술원)→ 관계부처 협의→ 사전검토위원회→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 심의위원회(민간합동)심의
	금지·불허	관련법령 재·개정 필요

제출서류

구분	서식명	신속 처리	규제 특례	임시 허가
공통	신청서	■	■	■
첨부1	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에 대한 설명서	■	■	■
첨부2	사업실시계획서	□	■	■
첨부3	사전 검토 확인서	□	■	■
첨부4	신청기업 현황자료	□	■	■
기타	각 서식별 추가 증빙자료 - 기술 상세설명서 및 사용설명서 - 특허 자료 보유시 관련 증빙자료 - 설계서 및 도면 등	■	■	■

* 신청서 양식 : 에코스퀘어(<https://ecosq.or.kr/snd>)에서 확인가능

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
제도 운영을 통해
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
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.

| 신청방법 |

ECOSQUARE |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(에코스퀘어)
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| 순환경제규제샌드박스 ▶ 신청하기

온라인접수 : <https://ecosq.or.kr/sandbox>

| 상담문의 |

온라인 : <https://ecosq.or.kr/sandbox>

전화 : 02-2284-1790, 1791, 1792

* 신속처리,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절차 및 신청방법 등 제도 운영 전반 관련 상담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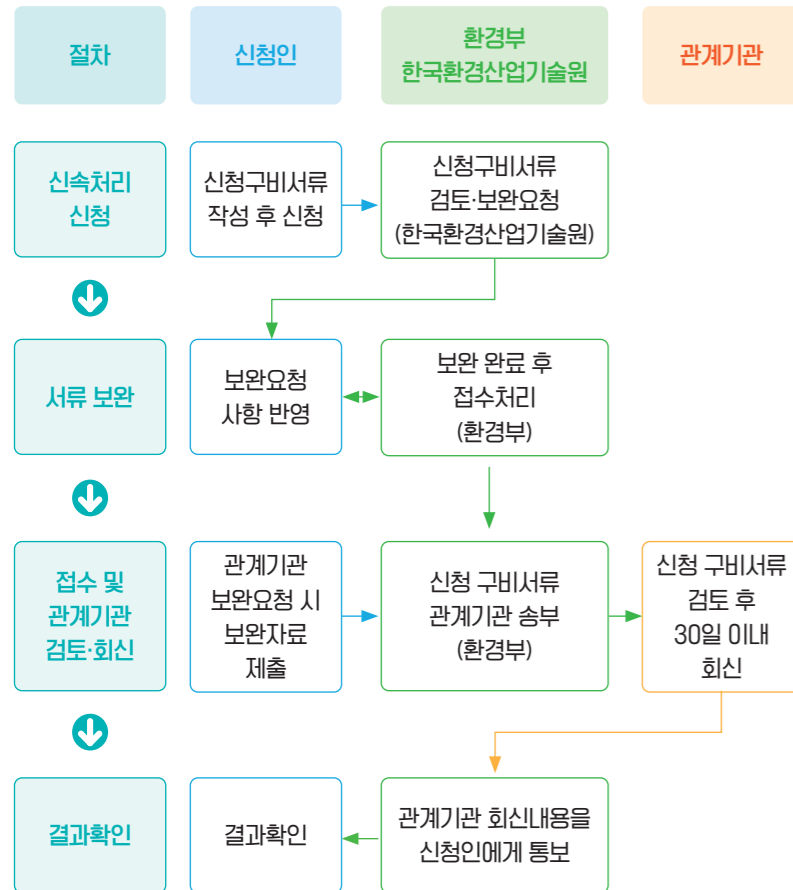
신속처리



신속처리는 어떤 제도인가요?

- ▶ 신청기업의 신기술·서비스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 등의 필요여부 및 관련 규제 일체 등을 관계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하는 제도
- ▶ 환경부로부터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업무 여부 및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회신해야 함
 - * 신청한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회신 내용에 포함

신속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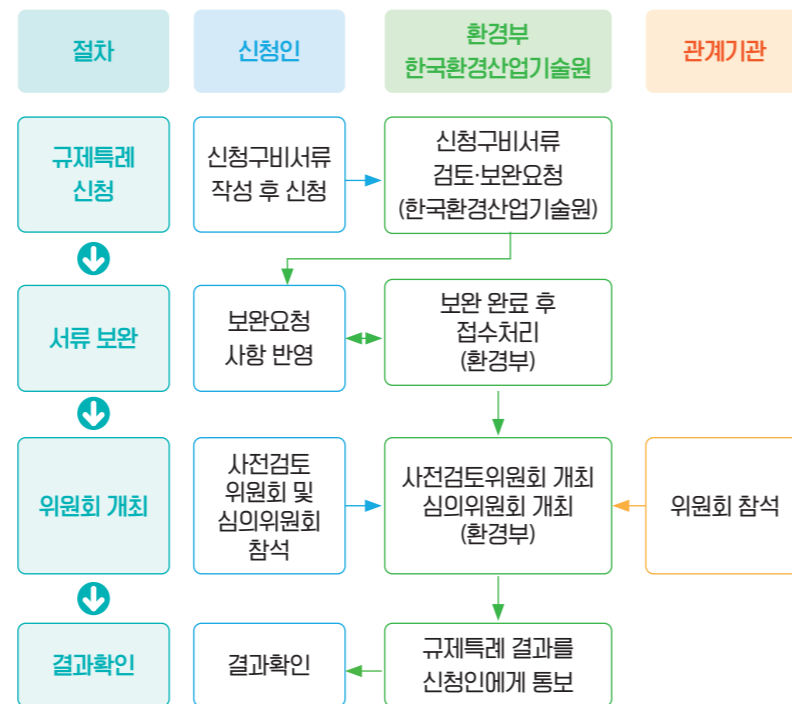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어떤 제도인가요?

- ▶ 신기술·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등의 시험·검증을 목적으로 제한된 구역·기간·규모 안에서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해주는 제도
 - * 2년 이내 기간 범위에서 1회 연장신청이 가능하며, 최대 4년(2+2년)까지 실증 가능
- ▶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신기술·서비스의 혁신성·안전성, 시험·검증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 부여 의결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▶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에 맞는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없는 경우
- ▶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·규격·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
- ▶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·기간·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
 - 관련행정기관은 실증결과등을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 후 조속히 법령정비 착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

임시허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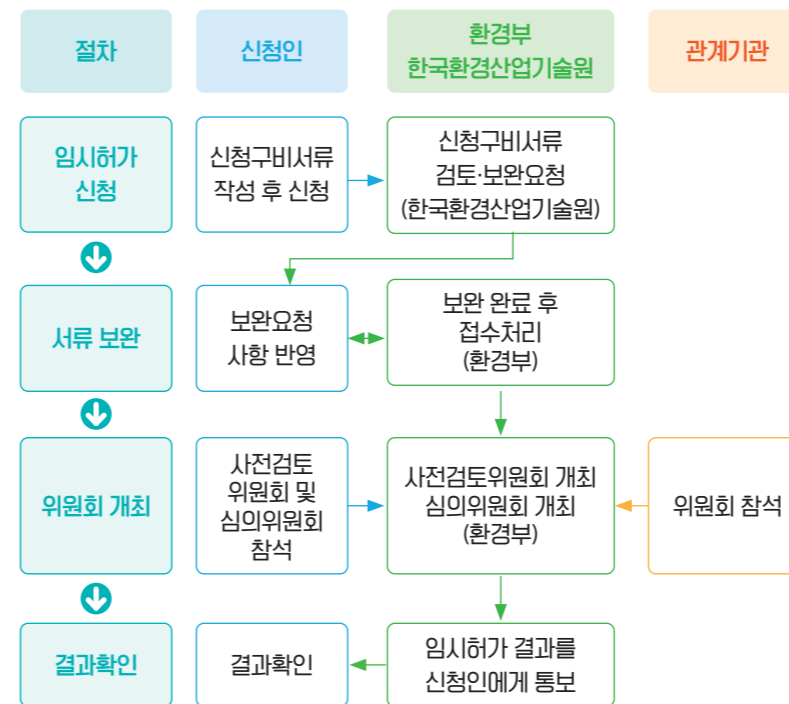
임시허가는 어떤 제도인가요?

- ▶ 안전성 등의 검증이 완료된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법령 정비에 앞서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
 - * 2년 이내 기간 범위에서 1회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, 2년 연장 후 법령정비 착수 후 법령정비 착수 후 법령정비 완료 시까지 임시허가 유효
- ▶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신기술·서비스의 혁신성·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 부여 의결

임시허가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▶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에 맞는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없는 경우
- ▶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·규격·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
 - 관련 행정기관은 임시허가 승인과 함께 조속한 법령정비 착수

임시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

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나요?



법률검토 및 컨설팅 지원

- ▶ 규제 애로 등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상담 지원
- ▶ 사업구조 및 사업모델 구체화 등 컨설팅 지원
 - * 규제샌드박스 대상인 경우 상담 지원 가능

실증특례비 및 책임보험료 지원

- ▶ 규제특례 승인기업 대상 실증비용 지원(최대 1.2억원 한도)
- ▶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기업대상 책임보험료 지원 (최대 2천만원, 총 보험료의 50% 한도)
 - *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지원(대기업 지원 제외)

이런점이 더 궁금해요



Q1 규제특례(임시허가) 이전에 신속처리 선행 여부 궁금합니다.

- 신청자가 알고 있는 규제가 불분명 할 수 있어 신속처리 진행 후 규제 특례 (임시허가) 신청 가능

Q2 손해배상책임보험 필수 가입여부 및 가입시기가 궁금합니다.

- '실증을 위한 규제특례' 및 '임시허가'를 신청하는 기업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가입할 수 없을 경우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·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필요
-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신기술·서비스의 사업 개시 전까지 제출

Q3 특례 기간 이후 특례 연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

-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,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 필요
 - * 단, 규제특례·임시허가 모두 최대2년 연장가능. 임시허가는 법령정비 착수 후 법령정비시까지 임시허가 유효